

1999. 8. 10.

제87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화순)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년 5월 일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경쟁력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제사무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대불금의 상환 등(제8조)
 - 제8조제2항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에 6개월 이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규정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고와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 제2항 대불금의 상환은 2종 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고 보호 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때,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부담금을 대불하여 주고 대불금액에 따라 납입기간을 정하여 분할 상환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규제하는 내용이었으나
-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내용을 완화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